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20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4. 11. 26.

판 결 선 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529,720원, 지방교육세 3,901,530원, 농어촌특별세 1,77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4

가. 원고는 2012. 2. 3. A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B 대 2,921.5㎡ 중 600/2921.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① 가동 702㎡(1층 234㎡, 2층 234㎡, 3층 234㎡, 이하 '이 사건 가동 건물'이라 한다), ② 나동 108㎡]을 매매대금 2,108,076,420원(이 사건 토지 2,058,696,459원, 위 건물 49,379,961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피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28. 위 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결과, 임차인 C가 이 사건 가동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가동 2, 3층은 공실로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동 2, 3층은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 보관창고였는데 리모델링 준비로 잠시 비워둔 것이라며,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가동 1층에 관한 취득세 1,156,210원, 지방교육세 115,610원, 농어촌특별세 57,800원만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가동 2, 3층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동 건물 부지(252㎡)에 관하여 취득세 43,451,330원, 지방교육세 3,979,490원, 농어촌특별세 1,806,9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며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4

사건 당초처분을 취득세 42,529,720원, 지방교육세 3,901,530원, 농어촌특별세 1,775,05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동 1층 부분에 관한 주장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은 병원의 환자 및 보호자 등의 휴식 및 생리적 욕구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점, 의료행위와 관련성이 적다하더라도 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의료법상 허용되는 부대사업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의료업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 이 사건 가동 1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동 1층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가동 2, 3층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동 건물을 취득한 후 2, 3층을 의료소모품, 사무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이후 간호부서, 심사부서, 콜센터, 시청각실 등을 이전할 공간이 필요하여 2012. 10. 2.경부터 이 사건 가동 2, 3층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시공회사의 사정으로 2013. 4. 중순경 완공되었는바, 이 사건 가동 2, 3층은 의료업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4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가동 1층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가동 2, 3층을 의료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이 사건 가동 건물 부지면적 252㎡ 중 234/702(이 사건 가동 1층 면적 234㎡/이 사건 가동 건물 연면적 702㎡)에 해당하는 토지만 목적 외 사용으로 계산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계산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2013. 2. 28. 현지 출장한 결과, 이 사건 가동 1층은 C가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가동 2, 3층은 공실로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원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가동 2, 3층은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 보관창고였는데 리모델링 준비로 잠시 비워둔 것이라며, 2013. 3. 4. 이 사건 가동 1층에 관한 취득세 1,156,210원, 지방교육세 115,610원, 농어촌특별세 57,800원만을 신고·납부하였다.

3) 그러자 피고는 2013. 3. 19. 재차 현지 출장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가동 2, 3층 내부에는 낡은 의료장비와 의자 등 비품이 몇 개씩 있을 뿐 대부분 비어 있고, 전 소유자의 상호로 보이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있는 등 내부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4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4)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가동 2, 3층은 의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가동 1층은 의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물 부분 뿐 아니라 해당 토지 부분도 최초 감면받은 면적(600㎡)에서 안분하여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다.

5) 원고는 2012. 10. 2. E과 이 사건 가동 2, 3층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10.경 위 공사가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가동 1층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으로 정의하고, 제49조 제1항에서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4

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의료법상 허용되는 부대사업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곧바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관련 법령의 문언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동 1층의 휴게음식점이 의료업의 업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한다면 휴게음식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휴게음식점이 단지 직원이나 병원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커피전문점이 의료업의 업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가 주차장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휴게음식점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동 1층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동 2, 3층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4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4

살피건대, 피고가 2013. 3. 19. 현지 출장하여 확인할 당시 이 사건 가동 2, 3층 내부에는 낡은 의료장비와 의자 등 비품이 몇 개씩 있을 뿐 대부분 비어 있고, 전 소유자의 상호로 보이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있는 등 내부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낡은 의료장비 등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가동 2, 3층에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가동 2, 3층을 의료용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가동 2, 3층을 2012. 2. 3.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13. 10.경에야 완공하여 운영한 사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1년이 도과한 2013. 4. 중순경 완공하였다는 것이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가동 2, 3층 부분을 취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동 2, 3층은 의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가동 1층은 의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물 부분 뿐 아니라 해당 토지 부분도 최초 감면받은 면적(600㎡)에서 안분하여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라고 안내하였던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가동 2, 3층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가동 2, 3층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취득세 등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가동 2, 3층에 관하여 의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4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김희동

판사 장은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4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4

5.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끝.